

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? (단,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인 경우를 제외한다.) ( 1 )

질산에스테르류는 제5류 위험물로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.

2. 옥외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? (단, 시·도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.) ( 2 )

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은 제1석유류(인화점이 0°C 이상인 것), 알코올류, 제2석유류, 제3석유류,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이다. 아세톤은 제1석유류이지만 인화점이 -18°C이므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하면 안 된다.